

과감한 정부 권한 이양 '풀뿌리 초석'

풀뿌리 민주주의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21세기를 맞아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할까.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것은 44년전인 지난 56년 8월 8일 자유당 정권하에서의 시·읍·면장 선거부터였다. 당시 자유당은 엄청난 관·금권을 동원하고도 절반을 조금 넘는 50.3%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자 58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꿔버렸다. 이유는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쪽 자치제는 61년 5.16 이후 완전히 폐지됐다가 30년만인 지난 91년, 지방의회(광역·기초의회)가 부활되면서 다시 반쪽이나마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 재등장했으며 부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러 95년 6월 27일에는 건국 이후 처음 4대(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으며 98년 6월 4일 또 다시 4대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는 일단 의회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

이러한 제도적 완벽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소속 정당과의 관계, 지방자치법규의 미비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정책

시였다.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의 또는 고의로 지체될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 단체장이 먼저 처분을 내린 뒤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제도다.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 단체장·광역 의원 당적보유 갈등소지 잠재 법규미비 정책수행 장애

단체장, 사무국 인사 관할 의정활동 큰 걸림돌 작용 제도적 뒷받침 선결과제

실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경우 여야 당적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다 기초의원들도 외형상 당적은 없지만 실질적 당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갈등 소지가 항상 잠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한마디로 '強단체 弱의회'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제약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을 갖고 있다.

재의요구권이란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원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

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을 확정하면 단체장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실례로 지난 92년 전남 목포시의 광주 서구청은 해당 시·구의회가 동정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때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확정하자 이를 대법원에 제소, 문제의 조례를 무효화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 46회 임시회 당시 동국대진입로 및 교량확포장공사 예산을 선결행하고 사후 의결을 받은 것이 좋은 예다.

반면 의회는 단체장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출석요구권만을 가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불균형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 국가사무의 위임,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한계, 재정적 지방이양 등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사무 1만5천여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사무

는 약 19%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독자적 행정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역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 인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제도가 있긴 하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초·광역의회는 전체 숫자를 줄이더라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유급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법을 제정해 줄것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예산부족을 명목으로 미동도 않고 있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기능 자체가 애매모호해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좋은 예가 포항시의회와 마산시의회가 올해 발의했던 도폐지 건의안이다.



박대식 포항시의회 의장

분열과 갈등,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보내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 천년이 열렸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만 투명한 사회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던 지방자치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희망속에 새 천년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자치권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 합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 제·개정과 폐지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기능을 강화한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연말에 개최토록 된 정기회를 연 2회로 늘린 것은 정기회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보다 결국 자치재정의 확대와 인재의 발굴·양성에 귀결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토양위에 국가사무와 함께 재정력도 지방이양이 이뤄져야 하고 각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훌륭한 인재가 발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직능대표나 여성의 자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즉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보다 결국 자치재정의 확대와 인재의 발굴·양성에 귀결



이상수 경주시의회 의장

희망찬 2천년대의 서막을 여는 경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개막과 함께 30만 경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째 임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부족한 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직시하면서 시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치권의 간섭으로 인한 자치입법권의 제약과 한계, 의원의 명예직, 결직금지, 의정활동 지원의 형식성,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의 한계, 의회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 및 편향적 태도 등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냉철한 판단으로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장단 협의회의 법안제출로 제도권 내의 진입,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찬회 활동, 대주민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의원 개인의 능력발전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조직 자체의 능력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예산편성에 있어 중앙통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전국 의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천년의 서막과 함께 세계는 정보의 지식사회화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의회가 중앙정부 및 정치권, 주민과 시민단체, 집행기관과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구심체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변화를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할 때 보다 밝은 미래가 전개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회조직 자체의 능력발휘와 전문성 확보 위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

안동으로 오세요

가는 천년! 맞는 천년을 안동에서

■ 나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서제를 올립니다.

- 시간: 1999. 12. 31 23:30 ~ 2000. 1. 1. 01:00
- 주최: 향교, 유도회
- 프로그램: 대제(현향, 현다, 현화, 현동례)

■ 가는 천년 맞는 천년을 시민과 함께 합니다.

- 시청광장: 길놀이, 시민한마당, 잔치, 서제
- 시민회관: 인형극, 안동100년, 사진슬라이드, 포크기타
- 실내체육관: 덩동맹 노래자랑(사회 개그연 김상호)

■ 역사가 숨쉬는 희망의 고장 안동

보는것에서 만족하는 관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안동에서 체험하는 테마관광을 해보십시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공연 행사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10. 6~ 10.15)
- 아천마을탈춤상설공연(3월 ~ 11월)
- 3월, 4월, 11월: 일요일 오후3시
- 5월 ~ 10월: 토, 일요일 오후3시

■ 테마 관광 안내

- 유교정신의 원류를 찾아서
 - 서원과 향교를 찾아보는 여행코스 (도산서원, 병산서원)
- 한국 가족속에 우리의 멋을 찾아
 - 전통과 고락을 중심으로 한 여행코스 (하회마을, 민속박물관, 민속촌, 지례창작예술촌, 오천유적지)
- 깨달음과 진리의 길
 - 사찰과 석탑을 중심으로 한 여행코스 (봉정사, 제비원, 신세동7층석탑, 일직조탑리5층석탑)

서제안내 0571851-6051 / 관광안내 0571851-6393, 6397

안 동 시

http://city.andong.kyongbuk.kr